

# 2020년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 20.(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승수,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접속차단 된 해외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URL 구글 검색결과 제외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37건(안건번호 제2020-3561호~448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561호~3566호는 블로그에서 해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567호~3634호는 블로그에서 음악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안임.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정권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건번호 제2020-3635호~364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648호는 불법복제물 요청글에 댓글로 불법복제물이 제공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소셜(파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649호~3650호는 공개였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를 회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카페 게시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651호~374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6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접속차단 된 해외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URL 구글 검색결과 제외 심의
  - 주요내용: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1항을 근거로 보호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대체하는 20개 해외사이트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관하여 보호원이 '구글'에 대해 검색결과 제외 조치를 요구할 타당성 및 필요성 심의
  - 회의결과: 20개 대체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원이 '구글'에 대하여 20개 대체사이트 URL에 관한 검색결과 제외 요청을 할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공공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의 내용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회의록 4면부터 7면까지 민원인 개인정보나 민원 내용이 직접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나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배급사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 이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민원 내용에 해당하므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원 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명, 배급사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 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3561호~4485호 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837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61 호~356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 이용자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해외 애니메이션 ‘♡♡♡’, ‘♣♣♣♣♣’, ‘♠♠♠♠’, ‘◆◆◆’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을 재생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61 호~3563호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은 미국 TV 애니메 이션으로, 2005. 2. 21.부터 2008. 7. 19.까지 시즌 3로 총 61화 방영 되었음. 국내에서는 니켈로디언 코리아, 한국교육방송공사, 투니버스 에서 방영되었으며, DVD는 정품 약 49,500원에 판매 중임. 안전번호 제2020-3561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물의 출처를 직접링크 방식으

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을 재생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64호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4기는 국내 대원방송에서 2019. 10. 12.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4개의 광고가 달려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을 재생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65호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일본 도쿄 MX와 AT-X에서 2019. 10. 7.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을 재생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66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916화의 줄거리, 28초 분량의 미리보기 영상과 함께 자막이 있는 전체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 불법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에 게시된 한 화 전체분량의 '◆◆◆' 애니메이션으로 연결됨. 영상물 '◆◆◆'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22기는 일본 후지 TV에서 2019. 7. 7.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561호~356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20-3561호~3566호는 시정권고를 하여야 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 C 위원 : 이견 없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561호~356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67호~3634호는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OST 음원을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3567호~3589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닫는 곡 음원 전체 분량과 클로징 크레디트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가사를 함께 게시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356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명탐정 코난 : 시한 장치의 마천루 (1997)’의 엔딩 영상 3분 1초가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일본어, 한국어 가사를 함께 게시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356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고,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을 재생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68호는 안전번호 제2020-3567호와 동일한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명탐정 코난 : 14번째 표적 (1998)’의 엔딩 영상 약 3분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을 재생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90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여는 곡, 닫는 곡 음원 전체 분량과 오프닝 크레디트, 클로징 크레디트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가사 및 mp3 파일을 함께 전송한 사안임. 하지만 현재 mp3 파일은 다운로드 되지 않음. 해당 게시물은 2019. 6. 20.에 업로드됨.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을 재생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591호~3633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여는 곡, 닫는 곡, 메인테마 곡 음원 전체 분

량과 오프닝 크레딧, 클로징 크레딧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가사 및 mp3 파일을 함께 전송한 사안임. 현재 mp3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을 재생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634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과 OST 음원 전체 분량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상과 함께 가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9. 4. 18.에 업로드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567호~363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OST 음원은 판매 중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OST 음원의 판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B 위원 : OST 음원의 일부인 여는 곡, 달는 곡은 마케팅을 위해 일부러 공개되는 경우도 있음. 해당 음악저작물이 판매 중인 음원이 아니라면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 어려워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해당 OST 음원들의 발매 시기는 1997년 후반부터 2019년까지로 보임.
  
- D 위원 : 해당 복제·전송자는 주로 애니메이션 OST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최근에 업로드되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2019년도에 게시되었음.



- C 위원 : 해당 블로그에서 다른 애니메이션 OST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탐정 코난'에 대한 게시물만 문제가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안전들은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한 것임. 민원인은 '명탐정 코난'을 게시한 url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하였음.
- B 위원 : 지금 간단히 검색해 보니 yes24에서 현재 품절이기는 하나 '명탐정 코난' OST 앨범을 판매했던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지난 1기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입장이 정리되어 있음.
- B 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OST 판매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D 위원 :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광고가 없고, 영상물 재생 횟수가 많지 않아 블로그 홍보를 위한 유인책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업로더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것으로 보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권고함이 적절한지 의문임.
- A 위원 : 경우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예컨대,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에 의견이 다를 수 있음. 법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음. 우리나라가 저작권에 대한 정책과 콘텐츠에 있어 세계 강국이

때문에 이를 선도하는 입장을 취할 수는 있음.

- B 위원 : 해당 블로그의 다른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가수/아이돌' 카테고리를 보여주면서)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18개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  
( '유희왕 주제가' 카테고리에서 영상물을 재생하면서) 해당 게시물은 '유희왕'의 오프닝 곡을 4분 정도 제공하면서 가사를 함께 게시하고 있음.
- D 위원 : 법적으로 보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업로더는 취미, 관심사를 바탕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C 위원 : 사안에 따라 권리자의 의사를 고려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여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음.
- A 위원 : 이에 대해 2기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음.
- B 위원 : 국내 OST 음원의 경우에는 ○○○나 다음이 전송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OST 음원의 공유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개인 블로그에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블로그의 방문자 수도 많지 않아 보이는 등 해당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있음.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2기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정리

하자는 의견임.

- D 위원 : 과거의 OST 음원의 경우 해당 음원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심의대상 게시물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이용에 가까워 보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상업용 음원 해당 여부, 저작권자의 의사 등에 의문이 있어 전체위원회로 회부하여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567호~3634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635호~364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출판, 영화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3635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저는 게임/만화/영화를 업로드합니다”라 기재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3635호~3647호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635호~3641호 복제·전송자는 동일인임.  
(안전번호 제2020-3636호~364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물, 영화 복제물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635호~364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D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C 위원 : 해당 헤비 업로더는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여야 함.
- B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635호~364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648호~365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364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648호는 불법복제물 요청글에 댓글로 불법복제물이 제공된 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요청 글만 놓고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 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댓글 작성자가 올린 파일은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에 해당함. 해당 밴드는 밴드명만 보아도 소셜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밴드 소개에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020. 1. 7. 기준으로 1,000명임. 조사자료 우측을 보면, 밴드에 업로드 된 다른 불법복제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0-3649호~365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649호~3650호는 공개였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밴드 소개에는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를 회원 가입만 하면 볼 수 있는 카페 게시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됨.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020. 1. 6. 기준으로 6,391명임. 안전번호 제2020-3649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두 번 사는 플레이어’ 완결본, ‘회귀자가 다 뺏어먹음’ 1~225화, ‘권왕전생’, ‘아이작’ 완결본, ‘탐식의 재림’ 본편, 외전, 완결본 총 5개의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20-3649호 밴드는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하였는데 회원 수 약 3,000명이 어떻게 증원할 수 있었는지 의문임.
- B 위원 : 해당 밴드는 일정 인원수로 증원된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하였을 가능성이 큼.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648호~365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20-3648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와 복제물에 해당하여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안전번호 제2020-3649호~3650호는 공개였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밴드에 대한 사안으로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

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648호~365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651호~3740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어도비'사의 Photoshop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Microsoft Office, 'Pinnacle Systems'사의 Pinnacle Studio (Plus, Ultimate), '오토데스크'사의 Autodesk Inventor 등 프로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367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icrosoft Office 2007 프로그램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명을 'Microsoft Office 2007~2019'로 하나로 묶고 있음. 온라인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 저작물명을 분리해달라고 전달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리얼 키를 텍스트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3651호~374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참고로 지난 제2020-6회 전체위원회에서는 상업용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 심의와 관련해서 권리자들의 의사 확인을 요청하였음. 권리자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기준 재정립을 위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그 전까지는 이전의 심의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시리얼 키가 함께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권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D 위원 : 권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651호~37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741호~4485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말레피센트 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847호는 2019. 10. 17.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전편 ‘말레피센트’는 2014. 5. 29. 개봉함.

(영화 ‘결혼 이야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940호는 2019. 11. 27.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SMI 한글 자막 파일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영화는 2020. 1. 16. 현재 상영 중임.

(영화 ‘나이브스 아웃’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946호는 2019. 12. 4.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93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SMI 한글 자막 파일이 포함되어 있음. SMI 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으면 싱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막이 재생됨. 불법복제물 감상을 위해 자막 파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해당 영화는 2020. 1. 16. 현재 상영 중임.

(영화 ‘겨울왕국 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017호는 2019. 11. 21. 개봉한 ‘월트디즈니’사의 영화를 웹하드에서 32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1. 16. 현재 상영 중임. 참고로 전편 ‘겨울왕국’은 2014. 1. 16. 개봉함.

(영화 ‘라스트 크리스마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082호는 2019. 12. 5.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6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포드 V 페라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4121호는 2019. 12. 4.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6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1. 16. 현재 상영 중임.

(영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4181호는 2020. 1. 8.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7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우측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안전의 모니터링 날짜는 2020. 1. 8. 오전 2시경임. 심의대상 게시물 제목에 '캠버전'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영상 속에는 중국어 자막 위에 한글 자막이 덧씌워져 있음. 해당 영화는 2020. 1. 16. 현재 상영 중임.

(방송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4286호는 웹하드에서 '싸이코패스 다이어리 1~14화'를 1,06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tvN 채널에서 2019. 11. 20.부터 2020. 1. 9.까지 방영한 총 16부작 드라마 프로그램임.

(방송 '라끼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4344호는 웹하드에서 '라끼남 5화'를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Olive, tvN 채널에서 2019. 12. 6.부터 금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741호~448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해당 안전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임.
- D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41호~4485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567호~3634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3561호~3566호, 제2020-3635호~4485호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접속차단 된 해외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URL 구글 검색결과 제외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8면부터 24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접속차단 된 해외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URL 구글 검색결과 제외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호~20호에 대해 보호원이 구글에 검색결과

제의 요청을 할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결함.”

### 3.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 3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